

---

#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따뜻한 권익구제, 반듯한 청렴사회-

---

2024. 2.



국민권익위원회

# 순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추진성과와 평가 .....             | 1  |
| II.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.....  | 2  |
| III. 2024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 .....   | 4  |
| 1. 현장·민생 중심의 빈틈 없는 권익구제 ..... | 4  |
| 2. 국민참여·데이터 기반 신속한 제도개선 ..... | 8  |
| 3. 이권·카르텔 없는 청렴사회 실현 .....    | 11 |

# I. 추진성과와 평가

## 1 주요 정책 성과

- **(권익보호)**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고충을 적극 해소(2,677건), 기획조사를 통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 발생의 근본원인을 개선(20건)  
※ △불법주정차 신고구역 확대(인도.횡단보도 정지선 등), △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피싱 범죄 예방 등
- **(제도개선)** 민원 빅데이터 분석, 정책제안·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화하여 청년·취약계층 보호 및 규제 완화에 기여  
※ △국가자격시험 공인어학시험 인정기한 확대<sup>국정교제</sup>, △취약계층의 체납 건보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 
※ 국민제안 55,000건 모니터링 후 소관기관 연계를 통해 아동 양육비 지원 강화 등 민생정책 개선
- **(행정심판)** '행정심판통합기획단' 출범, 법률안 마련 등 '원스톱 행정심판'<sup>국정교제</sup>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, 구술심리 확대 등 국민의 행정심판 접근성도 강화  
※ △'EASY 행정심판(청구서 자동완성 시스템) 도입기관 확대, △집행정지 효력기간 30일 연장
- **(부패방지)**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정비 등 법·제도를 내실화하고, 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청렴수준 향상 및 '청년의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'<sup>국정교제</sup>  
※ △지방의원 외유성 국외 출장 방지 등 자치법규 개선, △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전수조사 등
- **(공익보호)** 각급기관의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실태조사 및 환수 노력을 견인하여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<sup>국정교제</sup> 하고, 보상 수준을 높여 공익신고 등 활성화  
※ △유가보조금·농업직불금 등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조사 결과 101억원 환수 등 조치 권고

## 2 평가 및 보완사항

- 지속적 권익구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 지속 발생  
▣ 민원 빅데이터 분석, 현장소통 강화 등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신속히 포착하고 적극 지원하여 '따뜻한 동행, 모두가 행복한 사회' 구현에 기여
- IMD(국제경영개발대학원)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, 우리나라의 법·제도적 규제 등 정부 효율성이 전년보다 하락(64개국 중 38위, 2단계↓)하여 획기적 전환 필요  
▣ 현실과 괴리된 법·제도·규제를 적극 개선하여 공정과 상식을 회복한 '반듯한 나라', '역동적 경제'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

## II.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

### 1 업무 추진 여건

- '3高 1低' 경제상황 장기화로 야기되는 민생 고충의 적극 해소 필요
  - '24년 경제성장률 전망(2.1%) 상승 등 경제여건이 나아지고 있으나, 세계적 고물가·고금리·고환율·저성장 기조는 여전한 상황
  - 이로 인한 서민·소상공인, 청년층, 취약계층 등의 사회·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는 만큼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를 발굴·지원하는 노력 필요

#### 정책방향

⇒ 민생현장 소통 강화 및 적극적 고충 해소로 실질적인 권익 보호

- 출범 3년차 정부에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기대하는 국민
  -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 추진 3년차인 만큼 체감할만한 정책 성과가 나타날 시기라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상황
  - 부처 및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국민의 정책 수요에 즉시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

#### 정책방향

⇒ 칸막이 없는 행정을 통해 국민 불편·부조리를 신속 해결

-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바라는 국민 요구 증가
  - 제22대 총선 전후로 나타날 수 있는 인사청탁·이권개입·전관특혜 등 카르텔형 부패로 인해 국민의 정부 신뢰가 하락할 우려
  - 국가청렴도('23년 63점/32위, 국제투명성기구 발표, '24.1월)의 지속적 상승을 위해 지방의회의원·지자체장 행동강령 위반 등 부패 관행 근절 필요

#### 정책방향

⇒ 부패 사각지대 엄정 대응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정부 확립

- ◆ 국정 3년차를 맞아 **현장·민생중심**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고, 반부패·청렴 문화를 확실히 정착시켜 **청렴선진국**으로 도약

## 비전

**따뜻한 권익구제, 반듯한 청렴사회**

## 핵심목표

현장·민생 중심의  
빈틈 없는 권익구제

국민참여·데이터 기반  
신속한 제도개선

이권·카르텔 없는  
청렴사회 실현

주요  
과제

- ①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민생 고충 해결
- ② 증가하는 민원의 효율적 감축 추진
- ③ 빠르고 편리한 행정심판 운영

**국민의  
민원 만족도 향상**

- 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민 참여 확대
- ② 빅데이터 분석으로 민생 현안 즉시 파악
- ③ 국민불편 해소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

**불합리·불필요한  
제도 및 규제 정비**

- ① 민생침해 및 지방부패 근절
- ② 반부패 법령·정책의 합리적 정비
- ③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문화 확산
- ④ 균형감 있는 신고자 보호·지원

**세계20위권  
청렴선진국 진입**

### III. 핵심 추진과제

#### 1 현장·민생 중심의 빈틈 없는 권익구제

◇ 정부 내 독립적·최종적인 권익구제기관으로서 현장과 민생 중심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결

##### 1-1.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민생 고충 해결

#### □ 민생·안전 등 긴급민원 신속 해결

- **(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)** 취약계층 긴급·구호민원 해결을 위해 부서별 전담자를 지정하고, 접수 즉시 현장출동, 긴급조치 등 최우선 처리
  - ※ (예) '국민콜110' 등으로 접수된 취약계층의 긴급 상담(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중단에 의한 조손가정 아동의 끼니문제 등)에 대해 전담자가 우선 출동하여 운영 재개 등 권고

| 취약계층 긴급·구호민원 중점처리 분야   |  |  |
|--|--|--|
| 주 거  | 복 지  | 세 무 · 금 용  |
|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시설 보수 등 공공임대 주택 세입자 고충</li> <li>✓저소득층 주거 지원</li> </ul> |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저소득층 생계급여</li> <li>✓조손가정 아동양육비·생활보조금 등 지급</li> </ul> |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장애인 세제혜택</li> <li>✓저소득층 소액 생계비 대출, 서민금융공급 등</li> </ul> |

- **(현장형 옴부즈만 강화)** 소외지역·취약계층 등을 찾아가 고충을 상담해주는 '달리는 국민신문고'를 적극 운영하여 국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
  - ※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기업·소상공인, 청년세대 등을 중점대상으로 연 100회 운영
- **(안전 위협요인 해소)** 교통안전 민원을 토대로 사고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경찰·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개선하는 등 안전 위협요인의 근원적 해소 추진
  - ※ (예) 포트홀(도로 위에 발생하는 구멍)로 인한 차량 및 인명 피해 민원을 분석하여 사고 빈발구역을 파악하고,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포트홀 발생 신고 및 보수 체계 개선

| 안전분야 기획조사 과제(안) |  |
|-----------------|--|
| 교통안전            | · 신호체계, 교통안전시설, 도로 등 지역단위 교통안전 종합개선방안 마련<br>·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포트홀 관련 피해방지 대책 마련     |
| 생활안전            | · 대규모 택지개발 과정의 도로·암반 등 주민 생활안전 우려 해소<br>· 공동주택 보행통로 및 쪽문 추가설치를 위한 녹지활용 개선방안 마련 |
| 주민안전            | · 중단된 재개발 등 사업구역 내 방치된 빈집 관리 개선방안 마련 등   |

## □ 집단갈등 해소에 역량 집중

- **(제도적 기반 마련)** 집단민원(5명 이상 제기한 민원) 이송·조정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다수의 국민이 관련된 사회문제를 조속히 처리할 기반 마련
  - ※ (예) 집단민원의 해결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권익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긴급한 사안에 권익위가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권한 부여(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)
  - ※ '23년 '영주 다목적댐 준공 지연' 등 집단민원 230건을 해결하여, 128,374명의 숙원 해소
- **(선제적 대응)** 언론보도·민원동향·'달리는 국민신문고' 상담 등을 토대로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해결
  - ※ 지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, 장기방치된 집단민원 수요 파악(매월)
- **(적극적 해결)** 민원 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이해관계가 원만히 조율될 경우 현장합의를 통해 신속히 국민 권리를 구제

## □ 경제활력 저해 민원 적극 해결

- **(규제민원 해결 강화)** 과잉규제, 세금부과 등 기업 운영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규제 민원은 현장출동·처리상황 점검(격주) 등을 통해 중점 처리
  - ※ (예시) 국유림 대부허가 요구 기업 민원, 기부채납 사업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등
- **(영세기업 고충 해결)** 기업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'기업고충 현장회의'(매월)를 통해 영세기업·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
  - ※ 지자체, 중기부·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경영 현장을 방문하여 맞춤형·현장형 해결방안 마련
- **(민생활력 회복 기획조사)** 중·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및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빈발민원 현황·원인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제도·관행 적극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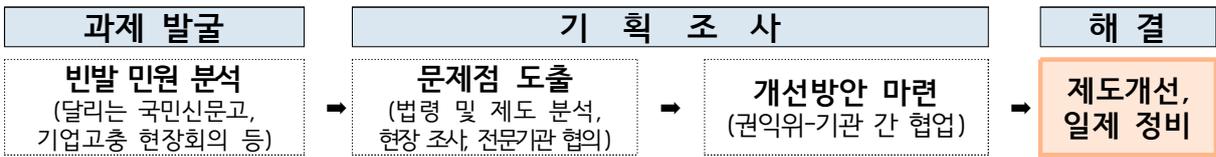
|           |   |
|-----------|---|
| 재산권<br>보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과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호구역의 광범위한 설정과 강력한 행위규제로 재산권 침해, 지역발전 저해</li> </ul> </li> <li>■ 군(軍) 징발토지 환매기한 제한 철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군 징발토지 환매권이 대금완납일 기준 5년으로 제한되어 실효성 없이 운영</li> </ul> </li> </ul>      |
| 기업<br>운영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미제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 불합리 등</li> </ul> </li> <li>■ 불합리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자 변경 신청기간 초과 시 강제 출국조치 등 외국인노동자 고용 기업에 과도한 규제</li> </ul> </li> </ul> |

## 1-2. 증가하는 민원의 효율적 감축 추진

◎ '23년 국민의 민원 제기건수는 1,237만건으로, 지자체 등 행정청의 민원 해결역량 강화 및 칸막이 없는 협업을 통해 행정 일선에서부터 국민 불편 해소 필요

### □ 부처간 협업 및 기획조사를 통한 빈발민원 근본 해소

- **(기획조사)** 주거·금융 등 민생과 직결되거나 개선대책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민원은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부처 간 협업으로 즉각 개선
  - ※ (예시) 사회취약계층 대상 보험계약보험금 지급요건 등 금융제도 개선, 농업인 대상 건강보험료 감면제도 안내 미흡,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방식 개선 등



### □ 지역의 문제 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

- **(운영근거 규정 보완)** 변화된 행정환경과 그간의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시고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
  - ※ (예시) 일정 규모(예:인구50만) 이상의 지자체에 의무설치, 위원 임기 자율성 부여 및 자격요건 완화, 시고위 명칭 변경(예:시민권익위)(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)
- **(신규설치 및 운영 지원)** 신규설치(현재 81개 지자체 기설치) 희망 지자체 대상 맞춤형 지원프로그램\*을 운영하고, 권익위의 민원처리 자문역할\*\* 강화
  - \* 멘토-멘티 지정 등 우수기관 매칭, 미설치 지자체 대상 합동 설명회 개최
  - \*\* 생소하거나 복잡한 민원의 경우 유사사례 및 적용 법령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시

### □ 각급 기관의 민원처리 전문성 제고

- **(민원 해결역량 강화)**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대상 민원처리 실무교육 등을 통해 민원 해결의 신속성, 국민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고
- **(실질적 민원해결 도모)**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체계 개선, 기관별 '평가등급 지도' 공개 등을 통해 기관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 노력 유도

**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체계 개선방향(안)**

- **평가대상** : 총 306개 기관(중앙행정기관 46, 시도교육청 17, 광역 17, 기초 226)
- **평가지표** : 민원서비스 국민신뢰도 평가 도입 등 민원 예방을 위한 지표 강화
- **결과공개** : 기관별 평가등급을 지도로 시각화하여 발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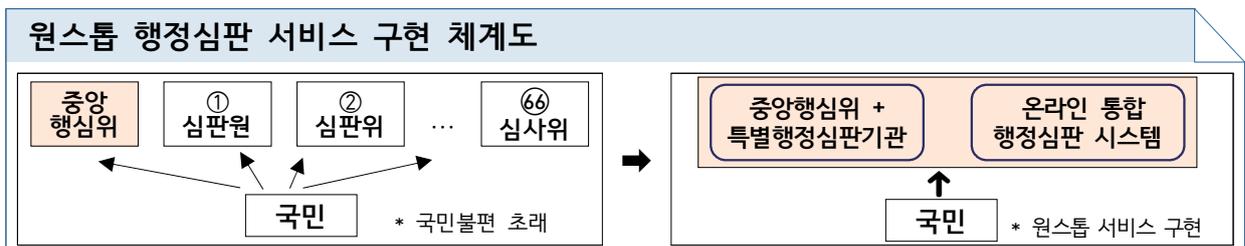
### 1-3. 빠르고 편리한 행정심판 운영

#### □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

- **(신속한 재결)** 행정처분을 한 공공기관이 관련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도록 하고, 답변서를 미제출해도 재결이 가능하도록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  
 ※ '23년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총 27,887건으로, 절차 효율화로 더 많은 국민의 권익 구제 가능
- **(더 쉬운 청구)** 국민이 행정심판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청구서가 완성되는 'EASY 행정심판' 서비스 활성화  
 ※ 이용기관을 확대(51개→60개)하고, 모범 재결례를 축적하여 자동완성 기능 강화 예정
- **(폭넓은 권익구제)** 중앙행심위 출석이 어려운 국민이 어디서든 구두 진술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를 활성화\*하고, 부당한 처분\*\*에 의한 권익 침해를 적극 구제  
 \* ('24년) 서울청사 활용 → ('24~'25년) 지자체 청사 활용 → ('25년) 모바일 화상 심리 시스템 구축  
 \*\* (예) 행정청 실수로 잘못 지급된 금원을 환수하는 것은 법률 위반은 아니나 부당한 처분일 수 있음
- **(중앙행심위 총괄기능 강화)** 중앙-각급 행심위 간 소통을 강화하고, 행심위 간 편차가 큰 사안의 원인 분석 및 개선으로 심판의 신뢰도 제고  
 ※ (교육행심위) '교권보호' 사건의 재결례를 공유하고 재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등

#### □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국정과제

- **(심판기구 통합)** 행정심판을 원하는 국민이 어디에 청구할지 알기 어려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행심위와 특별행정심판기관(66개) 통합 추진  
 ※ '통합기획단' 출범(권익위·행안부·법제처, '23.6월) 후 행정심판기구 현황 분석, 국민·전문가 의견수렴, 학술대회(11월) 등을 통해 통합안(행정심판법 일부 개정) 마련 → '24년 국회 제출
- **(시스템 통합)** 각 심판기관의 신청·창구·접수·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한 '온라인 통합 행정심판 시스템' 구축으로 심판청구의 편의성 제고  
 ※ (추진 일정) '24년 1단계 구축 → '25년 개통 → '26년 시스템 고도화



## ② 국민참여 · 데이터 기반 신속한 제도개선

◇ 디지털 플랫폼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듣고 정확히 분석하여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를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

### 1-1.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민 참여 확대

#### □ 국민 중심의 디지털 소통 플랫폼 운영

- **(민원 제기 편의 제고)** 국민이 민원·정책제안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확대('27년 1,300개 목표) 및 인증 절차 간소화 추진
  - ※ 국민신문고 :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민원창구를 통합·연계한 시스템. 현재 1,163개 기관 이용
  - ※ 로그인 수단에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 외에 모바일 신분증을 추가하여 편의성 향상
- **(국민생각함 활성화)** 국민생각함에 정책 의견을 주는 '국민패널을 상시 모집('23년말 2만2천여명)하여 대표성을 높이고, 주요 이슈 및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
  - ※ 국민생각함 : 국민이 직접 정책제안·개선 등에 참여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
  - ※ 현안에 대해 소관기관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, 생각함 활용 정책화 실적은 민원서비스 평가에 반영

#### □ 국민의 소중한 제안과 적극행정 신청을 정책으로 반영 국정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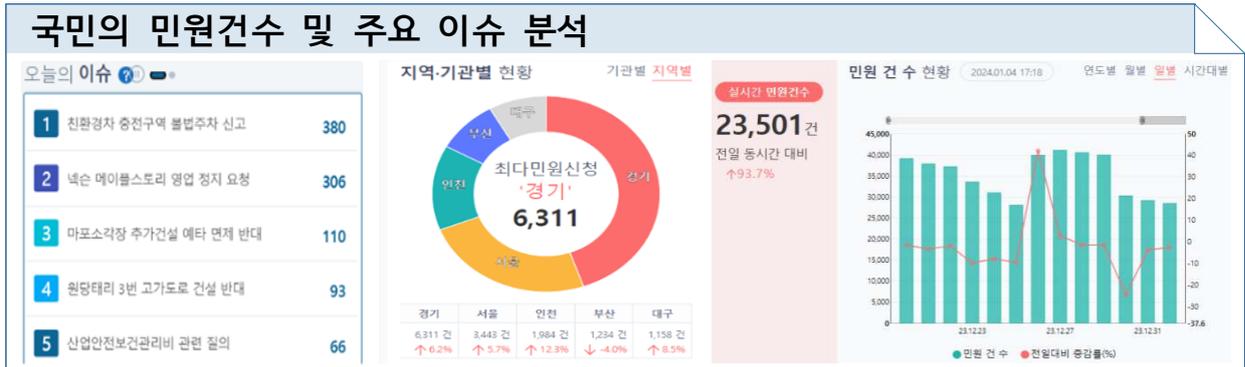
| 제안 접수·처리  | 정책화 과제 발굴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책화 과제 선정                     | 정책화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민 체감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(국민) 국민제안 신청<br>(소관 기관) 국민제안 접수 및 1차 검토·답변<br>소관 기관 | ⇒<br>모니터링, 정책화 과제 발굴<br>대통령실·권익위 | ⇒<br>정책화 추진과제 선정<br>국민제안심사위원회 | ⇒<br>정책 반영 제도개선 추진<br>권익위·소관 기관 | ⇒<br>이행관리·홍보<br>대통령실·권익위 |

- **(정책화 지원)** '대통령실 국민제안' 실시간 모니터링,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민생 안정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화 후보과제 적극 발굴·지원
  - ※ 국민제안 연 5만여건 등을 전수 모니터링하며, 정책화 후보과제 1,200건 이상 발굴 목표
- **(정책화 이행)** 선정된 정책화 과제는 소관 부처가 신속히 개선하고, 정책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 및 홍보 지원 강화
  - ※ 정부 출범 후 60개의 정책화 과제를 발굴하였으며, '24년 중 누적 100개 돌파 예상
- **(플랫폼 통합)** 민원·제안·청원 원스톱 처리 등 국민편의 제고 및 소통 기능 강화를 위한 '국민제안 통합플랫폼' 개통 예정('24.2월)
- **(적극행정 활성화)**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\*의 확산(컨설팅, 우수기관 포상 등)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권리구제 강화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
  - \* 국민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권익위가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개선방안 등을 권고하는 제도

## 1-2. 빅데이터 분석으로 민생 현안 즉시 파악

### □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안 이슈 파악

- **(국민 관심사항 실시간 분석)** 국민신문고 등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민의 관심사항을 즉시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
  - ※ '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(bigdata.epeople.go.kr)'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주요 이슈, 민원 건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, 시기/기관/지역별 분석도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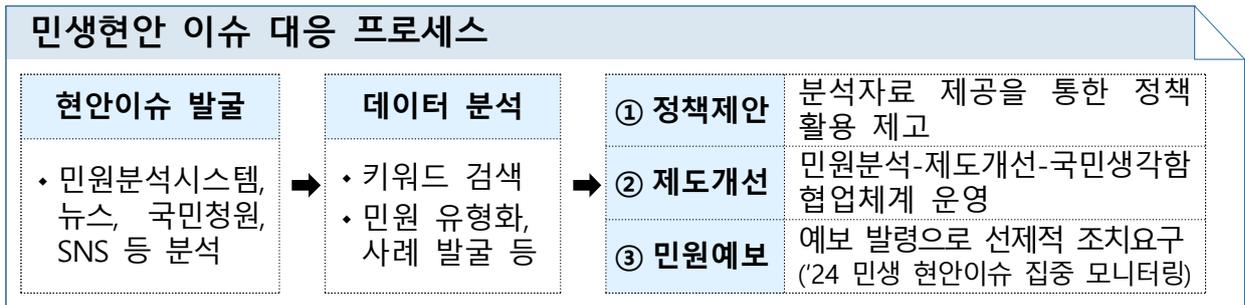
- **(국정방향 맞춤형 분석)** 민원데이터 기획분석을 통해 각 부처의 국정과제 이행 및 국정 현안의 추진 방향 제시

'24년 기획분석 주제(안) \* 민원 건수 집계기준 : '22.1.~'23.12.

- ✓ (민생현안) 물가 안정, 일자리, 고령층 생계비 부담 등 국민 경제생활 고충 관련(3,174건)
- ✓ (국민안전) 시설물, 교통, 소방, 식품 등 국민안전 위해요소 관련(22,749여건)
- ✓ (사회적 약자보호) 노인, 한부모가정, 아동 등 취약계층 관련(18,978여건)
- ✓ (생활밀착형 개선) 주거·복지, 환경·보건, 도로·교통 등 생활 불편 관련(902,549건)

### □ 민생 현안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

- **(현안이슈 대응)** 민생 현안이슈 분석으로 파악된 국민의 관심사안에 대해 민원예보를 발령하여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 유도
  - ※ ('23년 민원예보 이슈) 취약계층 주거(2월), 유기 동물(2월), 예비군 훈련(7월), 저출산 난임 지원 확대(8월), 반대 급증(11월),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(12월) 등



### 1-3. 국민불편 해소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

#### □ 제도개선을 통한 국정운영 지원

- **(국정현안에 맞춘 제도개선)** 민생경제 활력, 공정사회 구현 등 국정목표와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법·제도 개선 추진

| 분야         | 문제점  | 개선방향안  |
|------------|--|--|
| 청년세대 지원    | <b>&lt;청년세대 공정기회&gt;</b> [국정과제 91]<br>• 국가자격시험에서 공직자에게만 불합리한 특례 부여                     | ⇒ 무시험 자격부여, 시험과목 면제 등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 개선          |
|            | <b>&lt;청년 주거환경 개선&gt;</b> [국정과제 92]<br>• 대학교기숙사의 노후화 및 다인실 중심 운영 등 청년주거환경 열악           | ⇒ 청년의 선호를 반영한 대학교 기숙사생활관 환경 개선으로 주거환경 개선         |
| 민생경제 활력 제고 | <b>&lt;폐업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&gt;</b> [국정과제 1]<br>•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지원자 기준이 엄격하고 부실한 컨설팅으로 정책성과 저조 | ⇒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실효성 제고로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          |
|            | <b>&lt;소상공인 부담 완화&gt;</b> [국정과제 1]<br>• 특정 업종만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주고 있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증가        | ⇒ 근린생활시설 업종제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소상공인의 영업부담 완화         |
| 공정사회 구현    | <b>&lt;공공계약 불공정 관행 개선&gt;</b> [국정과제 14]<br>• 공공계약 문서에 권위적 표현 잔존, 불공정 조항, 갑질 관행 등 존재    | ⇒ 공공계약 부문에 잔존하는 불공정 조항 개선, 이의제기 절차 명확화 등 공정계약 정착 |
|            | <b>&lt;지방의회 의정정보 공개&gt;</b> [국정과제 14]<br>• 지방의회 의정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투명한 의정활동에 한계         | ⇒ 회의생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, 회의록 공개 기한 명확화 등 의정정보 투명 공개   |

- **(국정과제 이행)** 국가자격시험 운영 관련 청년층 불편사항 해소 및 공직자 관사 관련 부조리 개선을 통해 **국정과제의 연내 이행 추진**

| 권익위 국정과제 관련 제도개선 주요 추진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
| ✓ (국가자격시험 불편 해소) 공인어학시험 인정기한 확대(2년→5년) : '23.11. 개선권고 완료 |
| ✓ (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)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 폐지방안 검토 중 : '24년 예정   |

#### □ 국민의 제도개선 체감도 제고

- **(이행관리 강화)** 개선 권고사항이 신속히 이행되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**이행전략회의·컨설팅**을 통해 **각급 기관의 개선과제 이행을 지원**  
 ※ 이행현황 점검 및 이행부진요인 분석결과에 맞춰 컨설팅 등 실시('23년 이행률 78.4%)

### 3 이권·카르텔 없는 청렴사회 실현

◇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

#### 1-1. 민생침해 및 지방부패 근절

##### □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현장 속 부패근절

- **(정부업무 위탁·대행기관 집중점검)** 예산 100억원 이상이면서 재해구호, 시설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재정 누수 집중점검  
※ 대상기관(안) : 재해구호, 건설·상하수도·전기공사, 산업안전, 선박검사 등 관련 20여개 기관

##### 주요 점검분야(예시)

- **(계약 관련 특혜)** 법령·내규의 근거 없는 특정 업체와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등
- **(부적정한 회계관리)** 정부업무 위탁·대행 예산 방만 운영, 증빙자료 관리 미흡 등
- **(재정 누수)** 지출 증빙없는 회의비·출장비 지급, 업무추진비 선결제·분할결제·사적 사용 등

- **(부패 현안 적극 대응)** 권익위에 신고된 사건 및 언론 기사 등을 분석하여 파악한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 기획 실태조사\* 실시  
\* (예) 위험업무 상시 종사자가 아님에도 위험수당 지급, 지방의원 등과 지자체 간 부당 수의계약 등

##### □ 지방현장의 관행적인 부패 취약분야 개선

- **(지방의회 청렴역량 강화)** 소지방의회에 대해 청렴도평가\*를 실시('23년 92개→'24년 243개)하고, 지방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\*\* 강화  
\* 의정활동·의회 운영 관련 이해관계자 설문조사, 지방의회 맞춤형 지표 적용  
\*\* 지방의회 대상 직접 교육, 의원대상 반부패 행위규범 등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·배포
- **(취약분야 개선)** 지방세 징수포상금 방만 운영, 피복비 부정 사용, 지방의회 의원의 계약 관련 이권 개입 등 지방 일선의 재정 누수 취약부문 점검·개선  
※ 청렴도 평가 결과가 저조한 광역·기초자치단체, 지방의회 등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
- **(자치법규 개선)** 지방의회 운영, 인사·회계 등 기관 운영, 사업추진 등 자치법규 속 부패·불공정 유발요인을 중점적으로 평가·개선  
※ '22년(79개), '23년(78개)에 이어 86개 지자체에 대한 평가 완료 추진(약 15만개 자치법규 전수평가)  
※ (예시) 건설공사 부실시공 관리 강화, 기업 유치·지원 관련 심의위 공정성 제고 등

□ **공공재정 부정수급 실태 관리 강화** 국정교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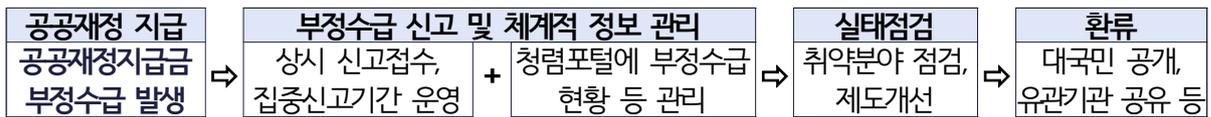
- **(취약분야 집중점검)** 민간,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회보장서비스, 교육 등 취약분야 집중 점검 실시

| 취약분야 집중점검 주요내용(안) | 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사회보장서비스           | - 사회서비스이용권(바우처)의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없이 부정하게 정부지원금을 수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근본 원인 개선 |
| 감사 점검 사각지대        | - 정부지원금의 목적외 사용,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수급 등 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육                | - 원장이 보육보조교사를 허위 등록하여 부정 수급하는 경우 처벌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**(부처책임 강화)** 부정수급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\*하고, 대국민 공개 및 재정당국 등 유관기관 공유를 통해 내·외부\*\* 통제 강화

\* (현행) 기관별 부정수급 금액·비율 분석 → (개선) 기관·법령·지원금별 다각적 분석

\*\* 예산편성 등에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에 자료 제공



**1-2. 반부패 법령·정책의 합리적 정비**

□ **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반부패 법령·정책 개선**

- **(반부패 행위규범 합리화)**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 속 현실과 괴리된 규정을 합리화하고,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

※ (청탁금지법)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상황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음식물 가액(현행 3만원) 등 조정 (청탁금지법 행동강령) 공직유관단체 신청, 소액 강의를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 검토

- **(제도운영 실효성 제고)** 현장조사·소통을 통해 반부패 행위규범의 기관별 운영현황을 점검·개선하고, 선거철 인사청탁·이권개입 등 테마별 점검 실시

※ (청탁금지) 기관별 위반신고처리 등 운영실태 점검, 부적절 처리사례 적발·시정(~6월) (이해충돌) 수의계약·가족 채용 제한 등 행위기준별 제도 운영 현황 점검(9~12월)

□ **디지털 기술 기반 부패방지 시스템 고도화**

- **(부패데이터 활용도 제고)** 반부패 종합 플랫폼인 청렴포털 등에 축적된 데이터\*의 공유·활용을 강화하여 부패 취약분야 발굴 및 선제적 대응

\* 부패·공익침해행위 신고, 부패공직자·행동강령 위반자, 반부패 법령별 제도 운영 현황 통계, 청렴도 평가 데이터 등('19년 이후 신고·보호·보상사건 등 63,233건 누적)

## 청렴포털 운영 개요

- (의의) 부패·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해 신고 상담부터 신청, 보호·보상까지 원-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
- (이용기관) 1,122개 공공기관
- (활용) 각 기관에서 입력한 부패공직자 정보 등을 토대로 부패데이터 분석, 반부패 정책 수립에 활용, 기관 협업 등



- **(디지털기술 기반 부패대응)** AI·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부패위험을 분석·탐지·예측하는 '부패데이터 활용 시스템' 구축방안 마련
  - ※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유사사례 분석, 타 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방안 등 연구

## 1-3.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문화 확산

### □ '2030 자문단'을 활용한 청렴정책 디자인

- **(청년 여론수렴)** 2030자문단\*을 중심으로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신규 발굴하고, 기존 정책의 청년 친화적인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여 정책에 환류
  - \* 청년보좌역(단장)을 중심으로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청년정책권익위 정책에 대한 자문 등 수행
- **(정책 제언)** 주제별·테마별 정책 토론회, 청년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2030자문단이 직접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청렴 정책을 디자인
  - \* 공정, 청년 일자리, 저출산, 주거복지 등 청년 관심사를 중심으로 토론회·포럼 등 실시

### □ 공정하고 청렴한 채용문화 확산 국정고제

- **(채용비리 적발강화)** 공정채용 전담기구인 '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'를 중심으로 공직유관단체(23년 1,386개) 채용실태 전수조사, 위험군 집중조사\* 등 실시
  - \* 감독기관의 인사감사 권한 부재로 사각지대에 놓인 공직유관단체(23개)는 권익위가 직접 조사 예정
- **(채용비리 재발방지)** 지방공직유관단체(415개 대상) 채용규정 중 법령을 위반하거나 누락한 항목을 개선하여 비리 유발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
  - ※ 「국가유공자법」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, 차별 소지 질문금지 등

### □ 교육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

- **(미래세대 청렴가치 내재화)** 초·중·고, 대학생, 청년인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확대 운영하여 청렴의 가치를 내재화
  - ※ 전임 교수요원 등 전문인력 및 교육시설 보강, 해외 반부패기관과의 협업 및 기술 지원(ODA) 등을 통해 연수원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, 전문 학술지 발간·교육프로그램 고도화 등 추진
- **(선출직·고위직 청렴 리더십 배양)** 선출직 공직자\* 및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을 중점 추진하여 청렴 리더십 배양, 청렴 역량 강화
  - \* 22대 총선 이후 각 정당 의원 연찬회, 당선자 모임 등과 연계하여 의원 보좌진 대상 교육 실시

## 1-4. 균형감 있는 신고자 보호·지원

### □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감시 기능 강화

- **(집중신고 기간운영)** 권력형 부패, 불공정 행위 등 부패·공익 현안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신고를 통한 부패감시 기능 활성화
  - ※ 부패·공익신고 빈발 분야, 언론보도 등을 분석하여 부패 취약분야 발굴, 분야 선정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되는 신고사건을 분석하여 필요시 기획 실태조사로 연계
- **(신고사건 처리 강화)** 부패·공익침해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강화하고, 재조사요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 보완 검토
  - ※ 검찰, 경찰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핫라인 구축 등 신고사건 처리 관련 협력 강화 병행
  - ※ 조사기관의 상급·감독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(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)

### □ 신고자 보호·지원 법령 정비

- **(신고자 보호·지원 규정 일원화)** 반부패 5개 법률에 제각각 규정된 신고자 보호·지원 규정을 통일하여 법령 불균형 해소 및 보호 수준 향상
  - ※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, 이행강제금, 위반자 제재수준 등 미적용 법률 보완
- **(하위법령 정비)** 부패·공익신고 및 부정청구 신고 보상·포상 수준이 동일해짐(23.12.시행령 개정)에 따라 하위 운영지침 등 신속 개선
  - ※ 포상금(최대5억원), 보상금 지급율(최고30%), 보상금 하한액(30만원) 수준 통일

### □ 보호·보상 업무의 합리성 강화

- **(합리적 비밀보장)**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확한 징계·고발기준을 마련\*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법 적합성 제고
  - \* 피신고자 고의·과실여부, 신고자와 피신고자 관계, 신고에 이른 경위 등
- **(신고자 지원 확대)** 신고내용의 공익실현 기여도 등을 반영한 보상금 지급 세부기준을 마련하고, 구조금 제도개선\*을 통해 신고자 지원 강화
  - \* 구조금 전담팀을 운영, 처리기한, 의료비 상향 등 구조금 지급 관련 세부기준 마련
- **(피신고자 권익침해 방지)** 균형 있는 시각으로 신고처리의 객관성·공정성을 담보하고, 무고 등으로 인한 피신고자 권익침해 방지
  - ※ 신고사건 이첩 여부 판단 시 피신고자에게 의견·자료제출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, 사건 종결 시 피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(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개정)